

의안번호	2210895
의 퇴 인	우재준 의원
회 답 일	2025. 6. 19.
추 계 번호	25C3277

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【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】

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 고
1	안 제47조의2(심폐소생술을 위한 응급장비의 구비 등의 의무)	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를 설치한 자가 부착하여야 하는 안내표지판의 규격, 색상, 부착장소 등의 사항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함	의무규정

II.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

1. 근거 규정

연번	조·항(조제목)	미첨부 근거 규정
1	안 제47조의2(심폐소생술을 위한 응급장비의 구비 등의 의무)	제3호: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
2. 상세 사유

- 개정안에 따라 보건복지부령으로 심폐소생술 응급장비 안내표지판의 규격, 색상, 부착장소 등의 사항이 정해짐에 따라 공공보건의료기관 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재정지원을 받는 기관이 새롭게 안내표지판을 제작·부착하여야 할 경우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
 - 현재 다음 [표 1]에 제시된 시설 등의 소유자·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현행 법에 따라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를 갖추고, 안내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함

[표 1]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를 갖추어야 하는 시설

구 분	시설 유형
현행법 제47조의2제1항	○ 「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3호에 따른 공공보건의료기관 ○ 「119구조·구급에 관한 법률」 제10조에 따른 구급대와 「의료법」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에서 운용 중인 구급차 ○ 「항공안전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항공기 중 항공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여객 항공기 및 「공항시설법」 제2조제3호에 따른 공항 ○ 「철도산업발전 기본법」 제3조제4호에 따른 철도차량 중 객차 ○ 「선박법」 제1조의2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선박 중 총톤수 20톤 이상인 선박 ○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「건축법」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 ○ 「산업안전보건법」 제18조에 따라 보건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장 중 상시근로자가 300명 이상인 사업장 ○ 「관광진흥법」 제52조에 따라 지정된 관광지 및 관광단지 중 실제 운영 중인 관광지 및 관광단지에 소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
현행법 시행령 제26조의5제3항	○ 철도역사(「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」 제2조제2호나목에 따른 광역철도 및 「도시철도법」 제2조제2호에 따른 도시철도 구간에 있는 철도역사는 제외)의 대합실 중 연면적이 2천제곱미터 이상이거나 전년도 일일 평균이용객수가 1만명 이상인 대합실 ○ 「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」 제2조제5호에 따른 여객자동차터미널의 대합실 중 연면적이 2천제곱미터 이상이거나 전년도 일일 평균이용객수가 3천명 이상인 대합실 ○ 「항만법」 제2조제5호나목3)에 따른 대합실 중 연면적이 2천제곱미터 이상이거나 전년도 일일 평균이용객수가 1천명 이상인 대합실 ○ 「관광진흥법」 제5조제1항에 따른 카지노 시설 중 영업장의 전용면적이 2천제곱미터 이상인 카지노 시설 ○ 「한국마사회법」 제4조에 따른 경마장 ○ 「경륜·경정법」 제5조제1항에 따른 경주장 ○ 「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」 제11조에 따른 교도소, 소년교도소 및 구치소, 「출입국관리법」 제2조제13호에 따른 외국인보호소, 「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소년원 ○ 「체육시설의 설치·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5조에 따른 전문체육시설 중 총 관람석 수가 5천석 이상인 운동장 및 종합운동장 ○ 중앙행정기관의 청사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청사 ○ 시·도의 청사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청사

□ 그러나 현 시점에서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해질 안내판의 규격·색상·부착장소 등과 이에 따라 기존의 안내판을 새로운 안내판으로 교체하거나 안내판을 신규로 부착해야 할 시설의 수 등을 합리적으로 추정하기 위한 자료가 부재함

- 따라서 현 시점에서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를 합리적으로 추계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, 개정안은 「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」 제3조 제1항제3호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에 해당

Ⅲ. 부대의견

- 없음

Ⅳ. 작성자

-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사회비용추계과	김우림	이진우

-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김우림	02-6788-3738	wrkim@nabo.go.kr